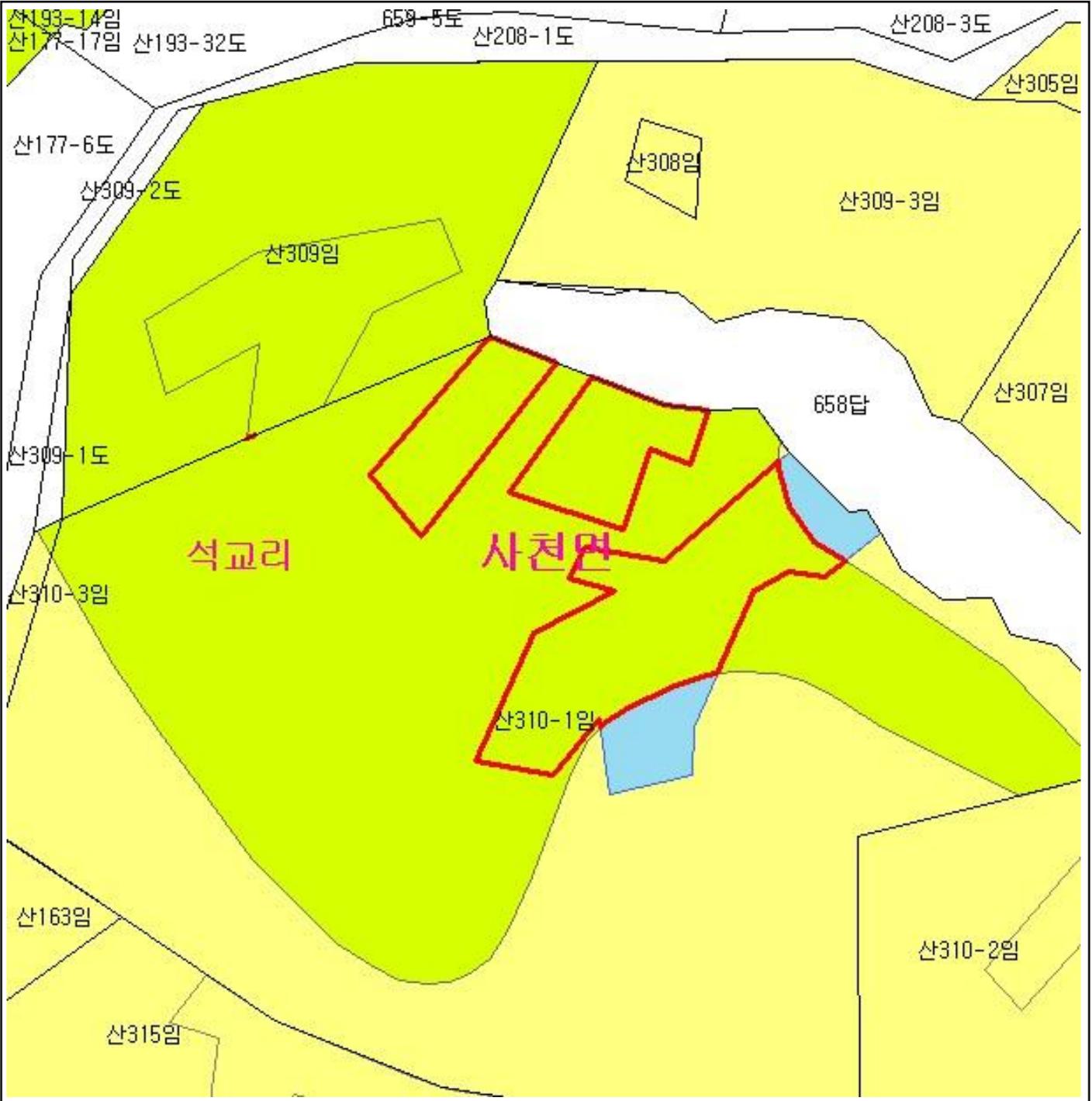


# 산 지구 분도

( 보전산지 변경지정 [ 공익용 ▶ 임업용 ] )

NJ52-10-5-064



## 범례

|   |       |   |      |
|---|-------|---|------|
|  | 공익용산지 |  | 지적선  |
|  | 임업용산지 |  | 행정경계 |
|  | 준보전산지 |  | 대상지역 |

지정권자 : 산림청장  
 고시일자 : 2013년 09월 16일  
 고시번호 : 산림청고시제2013-65호

- 비고 :
1. 측량의 기준 : 한국측지계
  2. 투영법 : 횡단 메르카토르도법(타원체는 베셀타원체)
  3. 높이의 기준 : 인천만의 평균해면
  4.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
  5.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, 국외반출, 임의개재, 편집을 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
  6.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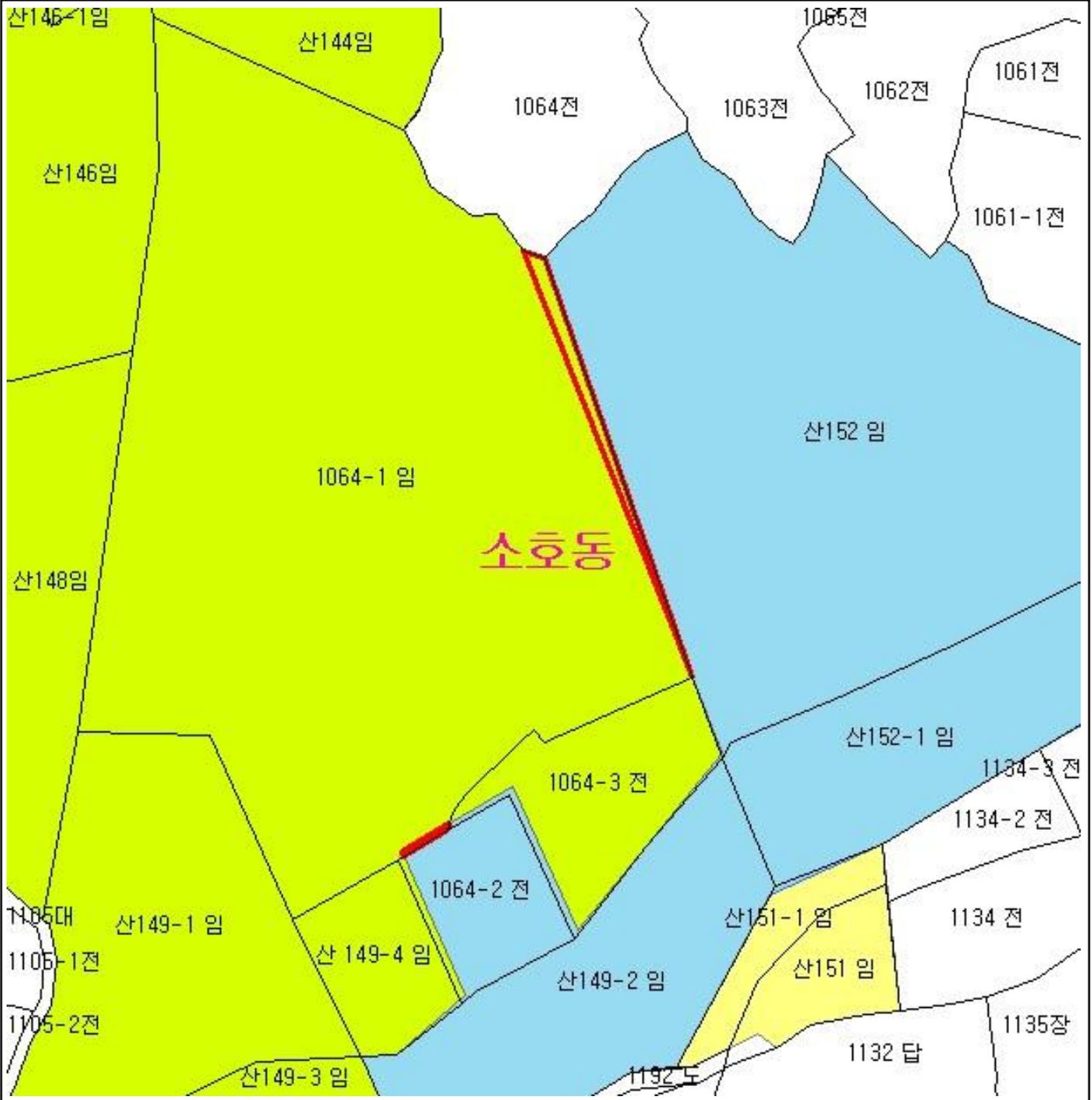


산지정보시스템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 
 산림청(<http://www.forest.go.kr>)

# 산 지구 구분도

( 보전산지 변경지정 [ 공익용 ▶ 임업용 ] )

N152-6-10-016



| 범례  |       |   |      |
|---|-------|---|------|
|  | 공익용산지 |  | 지적선  |
|  | 임업용산지 |  | 행정경계 |
|  | 준보전산지 |  | 대상지역 |

지정권자 : 산림청장  
 고시일자 : 2013년 09월 16일  
 고시번호 : 산림청고시제2013-65호

- 비고 :
1. 측량의 기준 : 한국측지계
  2. 투영법 : 횡단 메르카토르도법(타원체는 베셀타원체)
  3. 높이의 기준 : 인천만의 평균해면
  4.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
  5.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, 국외반출, 임의개재, 편집을 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
  6.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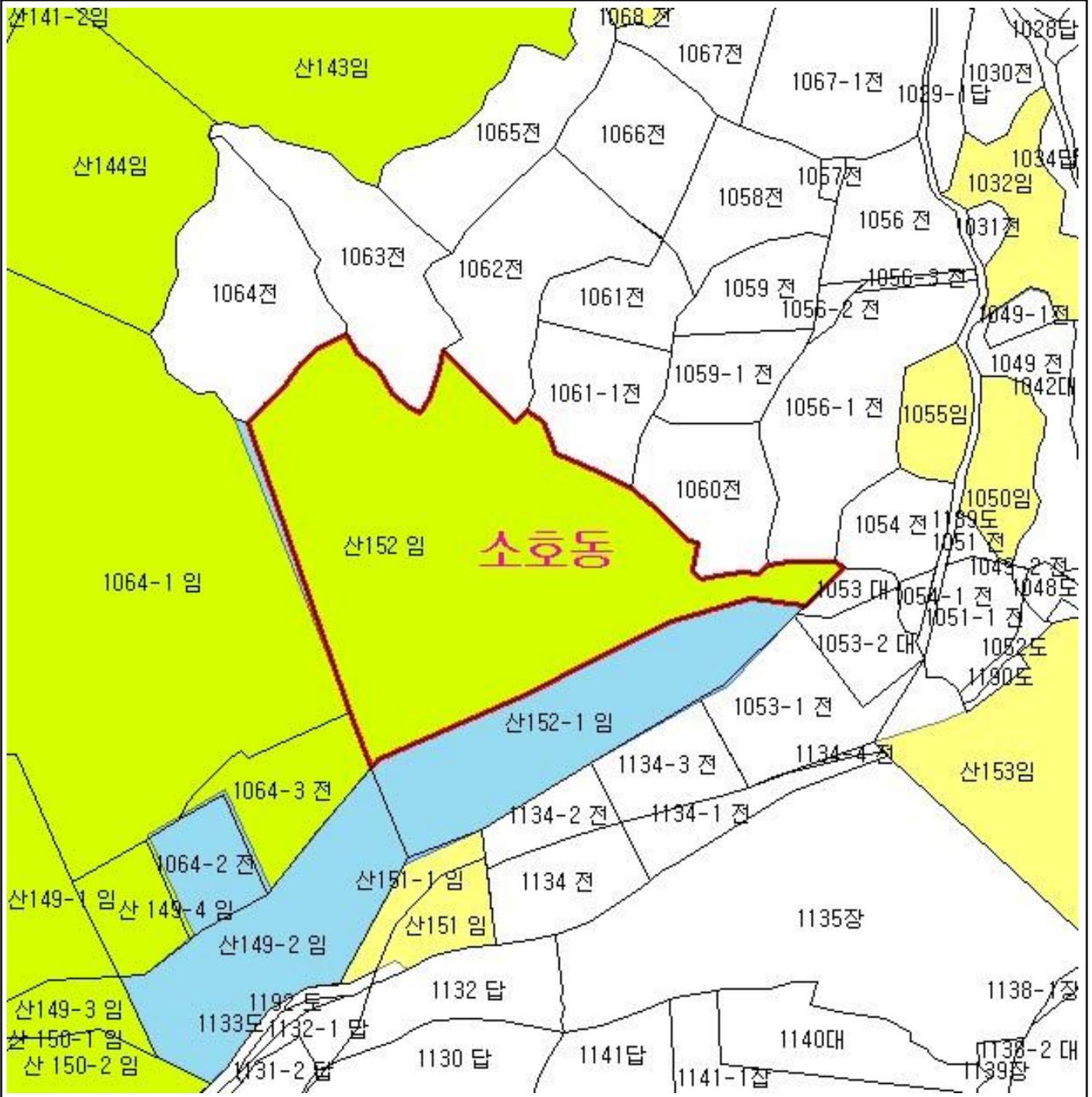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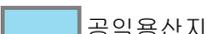
산지정보시스템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 
 산림청(<http://www.forest.go.kr>)

# 산 지구 분도

( 보전산지 변경지정 [ 공익용 ▶ 임업용 ] )

N152-6-10-016



| 범례  |       |   |      |
|---|-------|---|------|
|  | 공익용산지 |  | 지적선  |
|  | 임업용산지 |  | 행정경계 |
|  | 준보전산지 |  | 대상지역 |

지정권자 : 산림청장  
 고시일자 : 2013년 09월 16일  
 고시번호 : 산림청고시제2013-65호

- 비고 :
1. 측량의 기준 : 한국측지계
  2. 투영법 : 횡단 메르카토르도법(타원체는 베셀타원체)
  3. 높이의 기준 : 인천만의 평균해면
  4.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
  5.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, 국외반출, 임의개재, 편집을 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
  6.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



산림청  
KOREA FOREST SERVICE

산지정보시스템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 
 산림청(<http://www.forest.go.kr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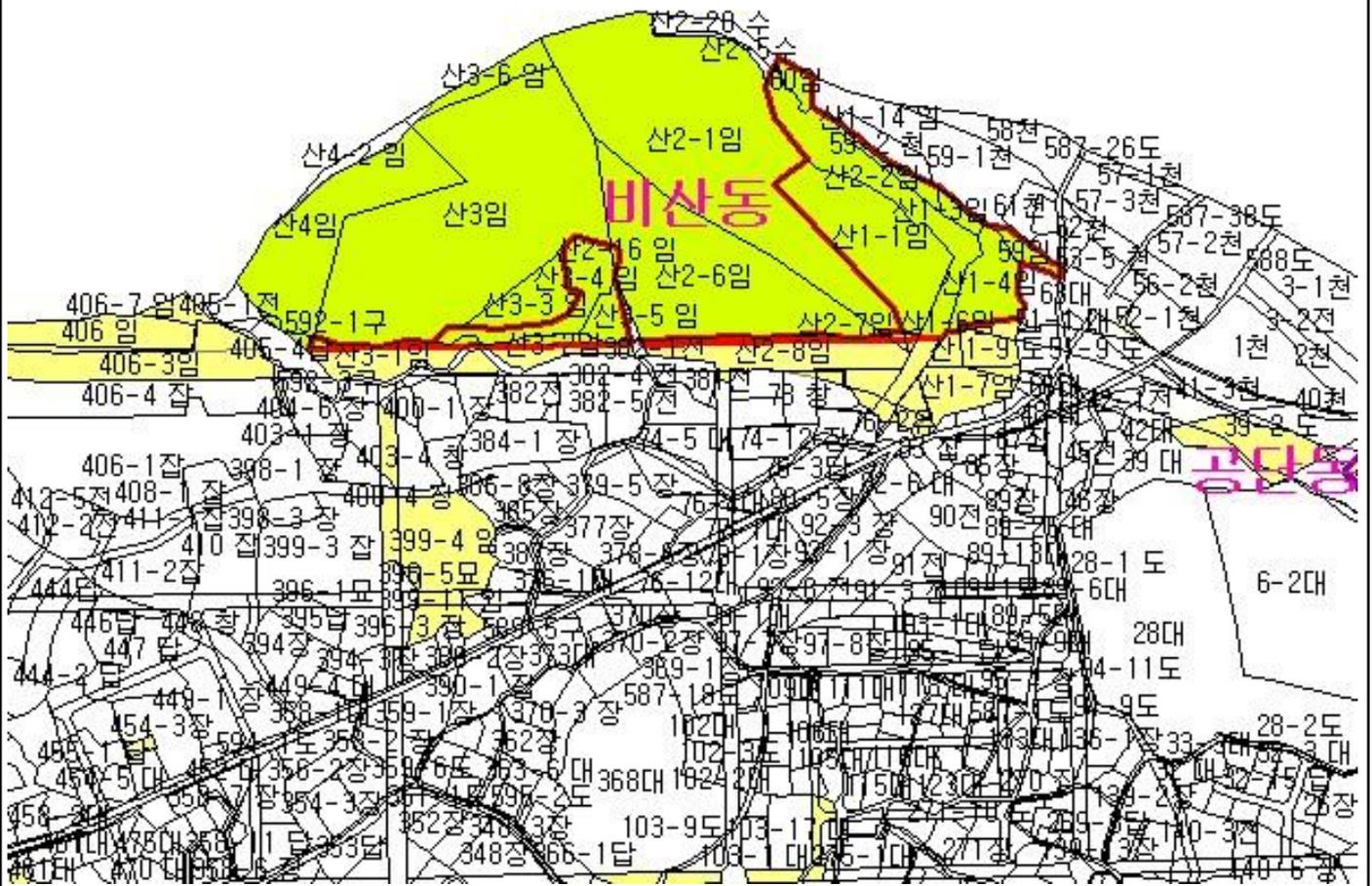
# 산 지구 분 도

( 보전산지 변경지정 [ 공익용 ▶ 임업용 ] 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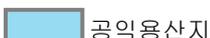
NJ52-14-24-056

352-천 352-1천 **암호동** 607-2천

584 천



## 범 례

|   |       |   |      |
|---|-------|---|------|
|  | 공익용산지 |  | 지적선  |
|  | 임업용산지 |  | 행정경계 |
|  | 준보전산지 |  | 대상지역 |

지정권자 : 산림청장  
 고시일자 : 2013년 09월 16일  
 고시번호 : 산림청고시제2013-65호

- 비고 :
1. 측량의 기준 : 한국측지계
  2. 투영법 : 횡단 메르카토르도법(타원체는 베셀타원체)
  3. 높이의 기준 : 인천만의 평균해면
  4.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
  5.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, 국외반출, 임의개재, 편집을 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
  6.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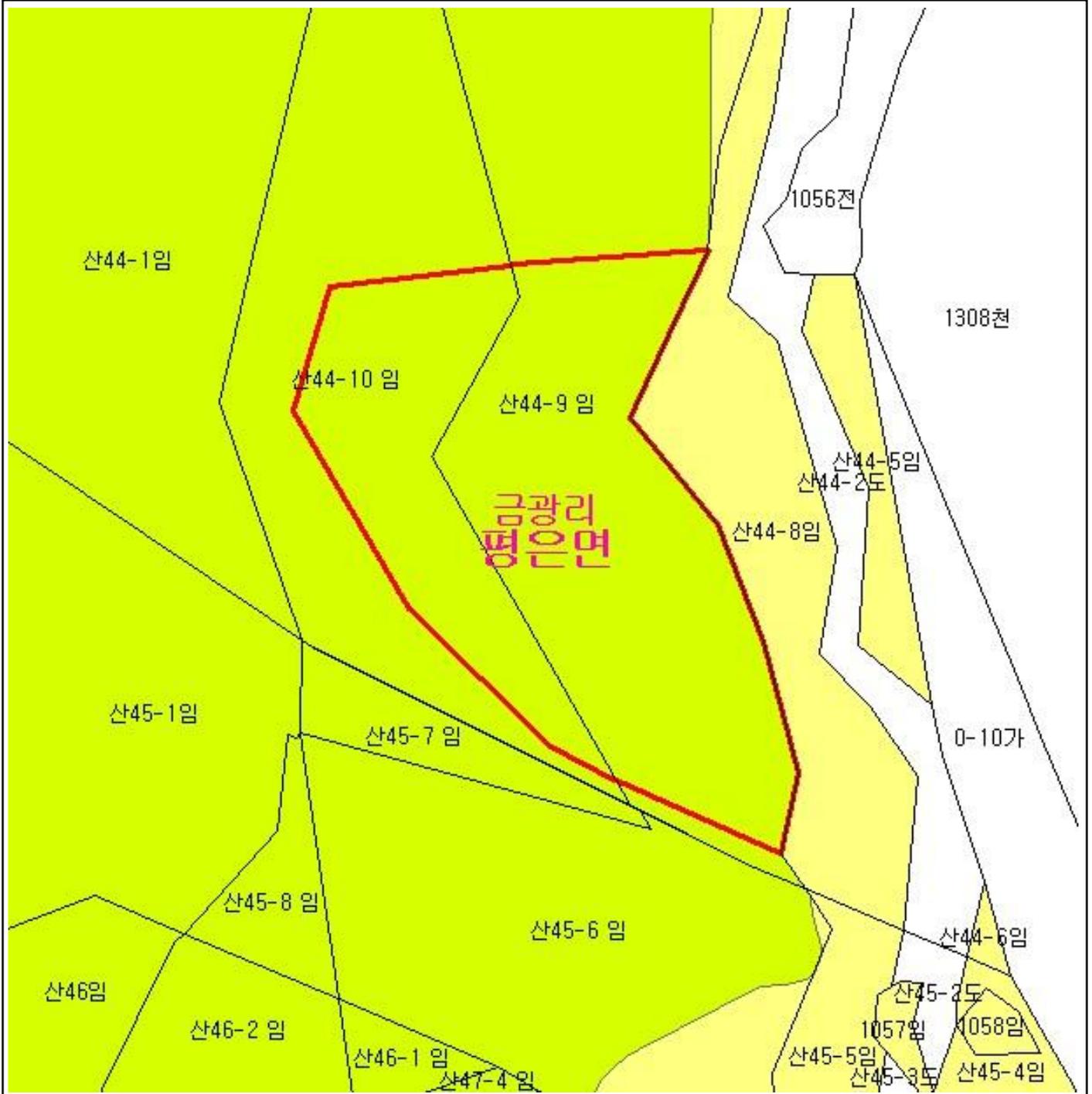


산지정보시스템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 
 산림청(<http://www.forest.go.kr>)

# 산 지 구 분 도

( 보전산지 변경지정 [ 공익용 ▶ 임업용 ] )

NJ52-14-11-007



## 범 례

|   |       |   |      |
|---|-------|---|------|
|  | 공익용산지 |  | 지적선  |
|  | 임업용산지 |  | 행정경계 |
|  | 준보전산지 |  | 대상지역 |

지정권자 : 산림청장  
 고시일자 : 2013년 09월 16일  
 고시번호 : 산림청고시제2013-65호

- 비고 :
1. 측량의 기준 : 한국측지계
  2. 투영법 : 횡단 메르카토르도법(타원체는 베셀타원체)
  3. 높이의 기준 : 인천만의 평균해면
  4.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
  5.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, 국외반출, 임의계재, 편집을 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
  6.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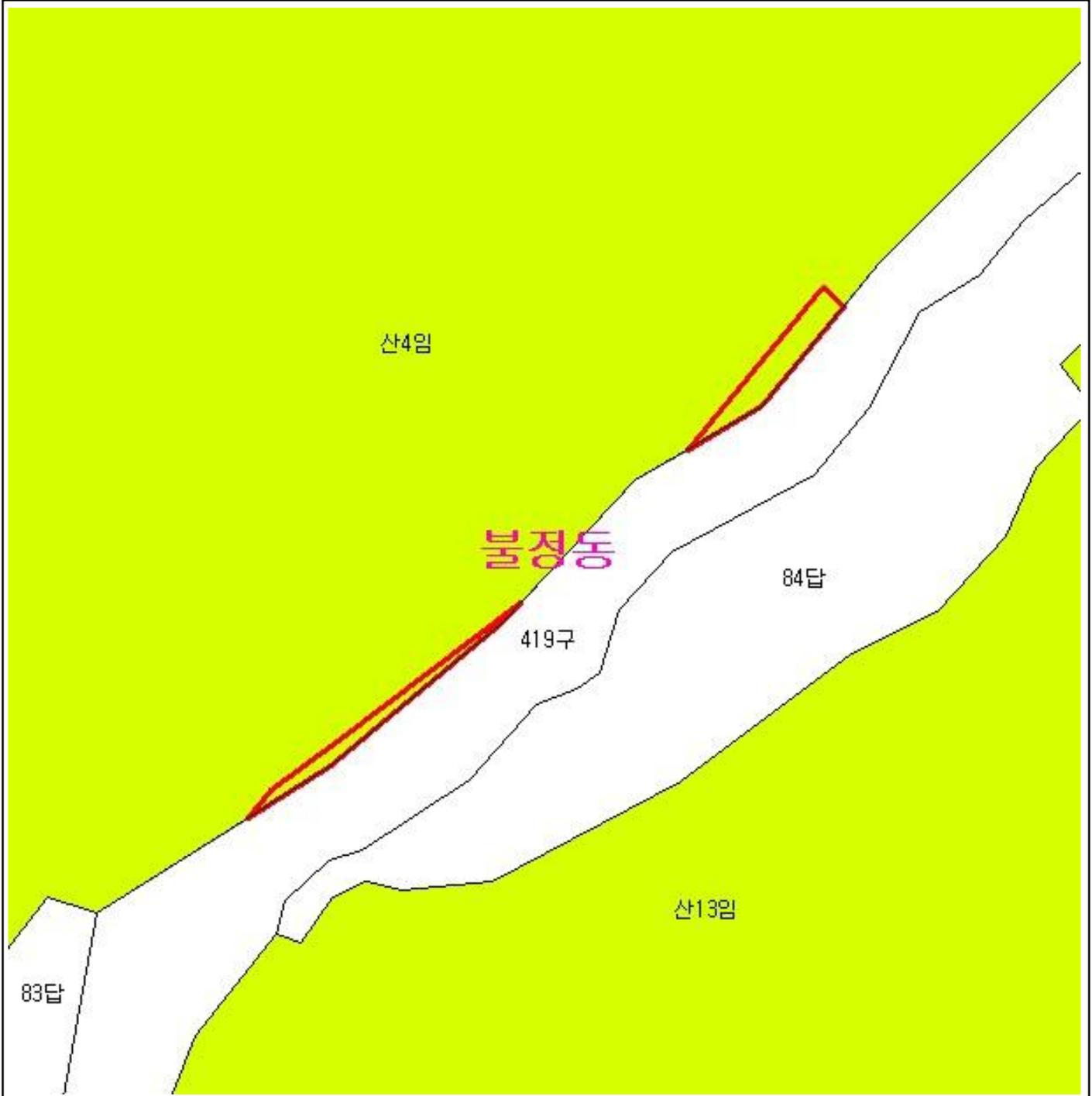


산지정보시스템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 
 산림청(<http://www.forest.go.kr>)

# 산 지구 분 도

( 보전산지 변경지정 [ 공익용 ▶ 임업용 ] )

NJ52-14-9-046



## 범 례

|   |       |   |      |
|---|-------|---|------|
|  | 공익용산지 |  | 지적선  |
|  | 임업용산지 |  | 행정경계 |
|  | 준보전산지 |  | 대상지역 |

지정권자 : 산림청장  
 고시일자 : 2013년 09월 16일  
 고시번호 : 산림청고시제2013-65호

- 비고 :
1. 측량의 기준 : 한국측지계
  2. 투영법 : 횡단 메르카토르도법(타원체는 베셀타원체)
  3. 높이의 기준 : 인천만의 평균해면
  4.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
  5.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, 국외반출, 임의개재, 편집을 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
  6.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



산지정보시스템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 
 산림청(<http://www.forest.go.kr>)

# 산 지구 분 도

( 보전산지 변경지정 [ 공익용 ▶ 임업용 ] )

NJ52-14-9-046



## 범 례

|   |       |   |      |
|---|-------|---|------|
|  | 공익용산지 |  | 지적선  |
|  | 임업용산지 |  | 행정경계 |
|  | 준보전산지 |  | 대상지역 |

지정권자 : 산림청장

고시일자 : 2013년 09월 16일

고시번호 : 산림청고시제2013-65호

비고 :

1. 측량의 기준 : 한국측지계
2. 투영법 : 횡단 메르카토르도법(타원체는 베셀타원체)
3. 높이의 기준 : 인천만의 평균해면
4.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
5.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, 국외반출, 임의개재, 편집을 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
6.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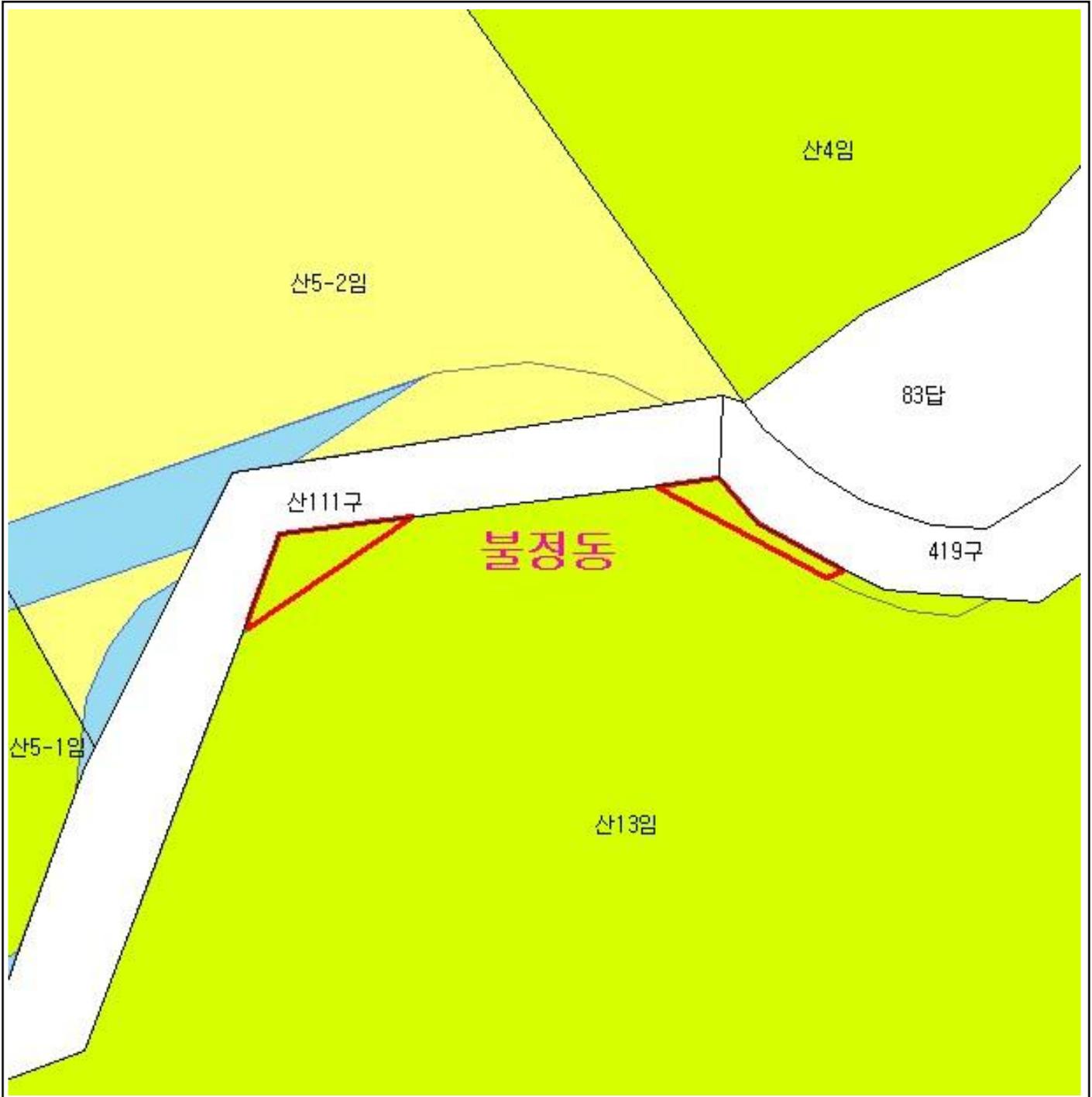


산지정보시스템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 
산림청(<http://www.forest.go.kr>)

# 산 지구 분 도

( 보전산지 변경지정 [ 공익용 ▶ 임업용 ] )

NJ52-14-9-046



## 범 례

|   |       |   |      |
|---|-------|---|------|
|  | 공익용산지 |  | 지적선  |
|  | 임업용산지 |  | 행정경계 |
|  | 준보전산지 |  | 대상지역 |

지정권자 : 산림청장

고시일자 : 2013년 09월 16일

고시번호 : 산림청고시제2013-65호

비고 :

1. 측량의 기준 : 한국측지계
2. 투영법 : 횡단 메르카토르도법(타원체는 베셀타원체)
3. 높이의 기준 : 인천만의 평균해면
4.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
5.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, 국외반출, 임의개재, 편집을 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
6.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



산지정보시스템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 
산림청(<http://www.forest.go.kr>)

# 산 지구 분 도

( 보전산지 변경지정 [ 공익용 ▶ 임업용 ] )

NJ52-14-9-045



## 범 례

|   |       |   |      |
|---|-------|---|------|
|  | 공익용산지 |  | 지적선  |
|  | 임업용산지 |  | 행정경계 |
|  | 준보전산지 |  | 대상지역 |

지정권자 : 산림청장

고시일자 : 2013년 09월 16일

고시번호 : 산림청고시제2013-65호

비고 :

1. 측량의 기준 : 한국측지계
2. 투영법 : 횡단 메르카토르도법(타원체는 베셀타원체)
3. 높이의 기준 : 인천만의 평균해면
4.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
5.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, 국외반출, 임의개재, 편집을 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
6.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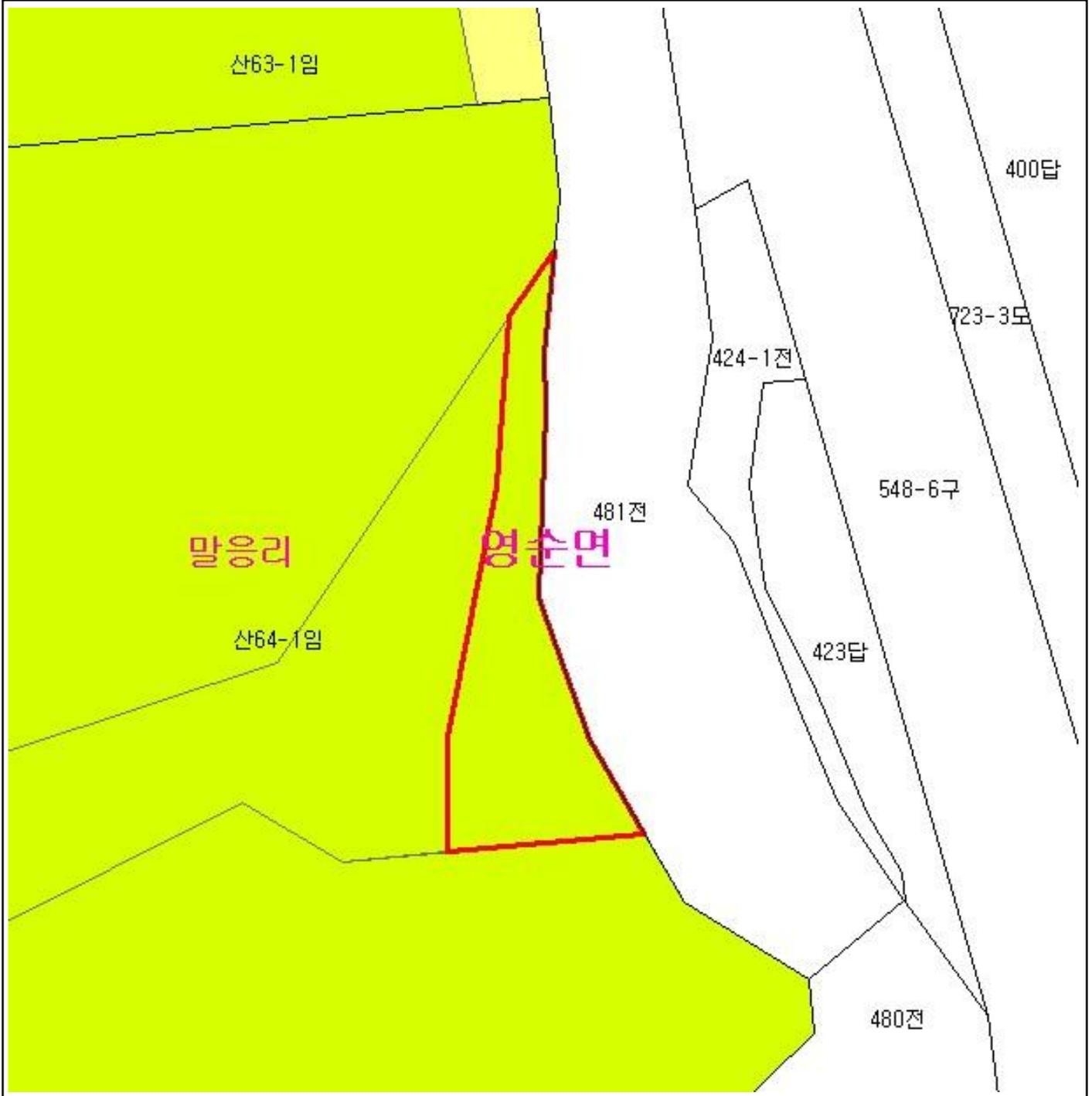


산지정보시스템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 
산림청(<http://www.forest.go.kr>)

# 산 지구 분 도

( 보전산지 변경지정 [ 공익용 ▶ 임업용 ] )

NJ52-14-9-090



### 범 례

|   |       |   |      |
|---|-------|---|------|
|  | 공익용산지 |  | 지적선  |
|  | 임업용산지 |  | 행정경계 |
|  | 준보전산지 |  | 대상지역 |

지정권자 : 산림청장  
 고시일자 : 2013년 09월 16일  
 고시번호 : 산림청고시제2013-65호

- 비고 :
1. 측량의 기준 : 한국측지계
  2. 투영법 : 횡단 메르카토르도법(타원체는 베셀타원체)
  3. 높이의 기준 : 인천만의 평균해면
  4.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
  5.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, 국외반출, 임의개재, 편집을 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
  6.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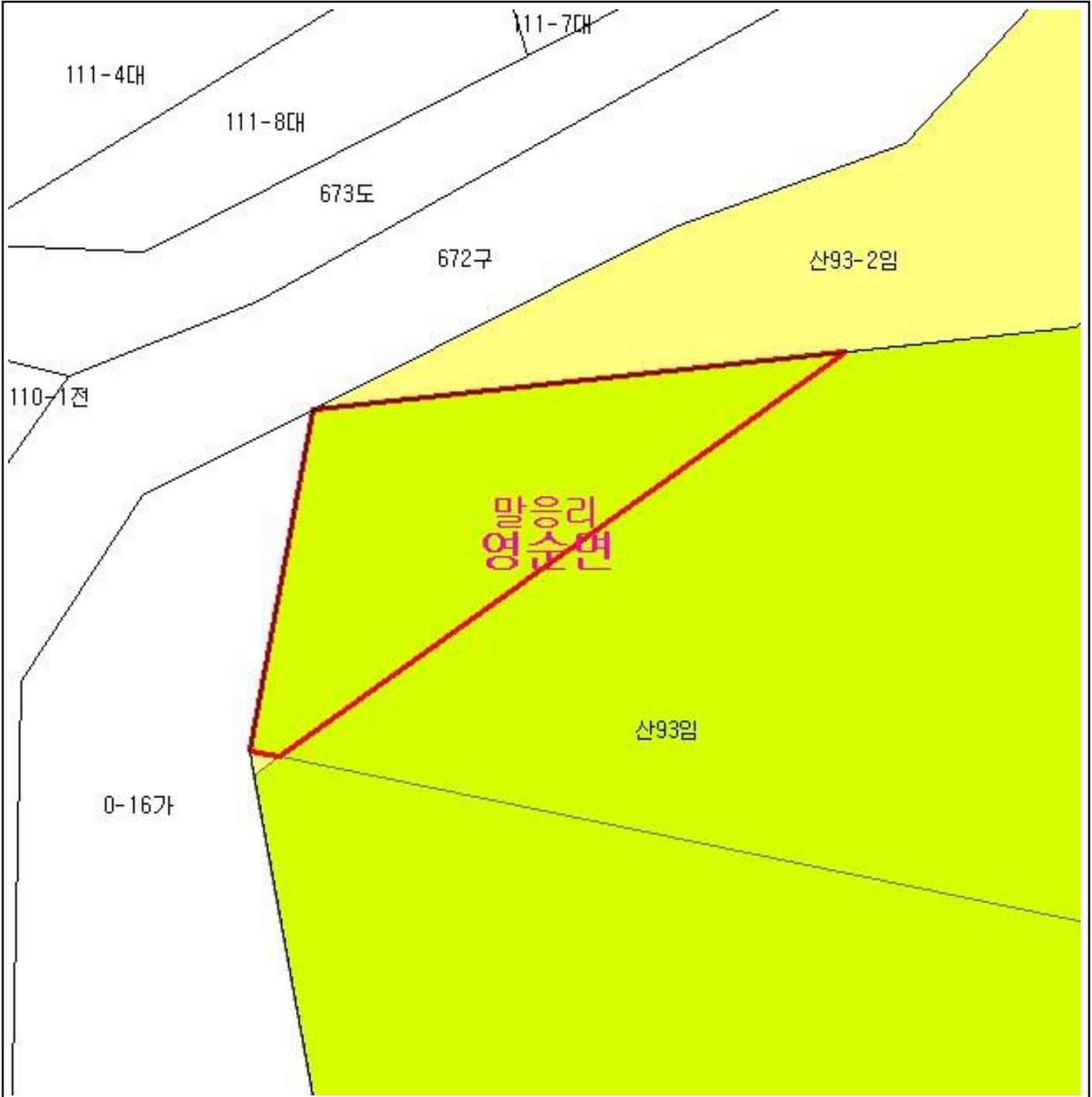


산지정보시스템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 
 산림청(<http://www.forest.go.kr>)

# 산 지구 분 도

( 보전산지 변경지정 [ 공익용 ▶ 임업용 ] )

NJ52-14-10-081



## 범 례

|   |       |   |      |
|---|-------|---|------|
|  | 공익용산지 |  | 지적선  |
|  | 임업용산지 |  | 행정경계 |
|  | 준보전산지 |  | 대상지역 |

지정권자 : 산림청장  
 고시일자 : 2013년 09월 16일  
 고시번호 : 산림청고시제2013-65호

- 비고 :
1. 측량의 기준 : 한국측지계
  2. 투영법 : 횡단 메르카토르도법(타원체는 베셀타원체)
  3. 높이의 기준 : 인천만의 평균해면
  4.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
  5.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, 국외반출, 임의개재, 편집을 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
  6.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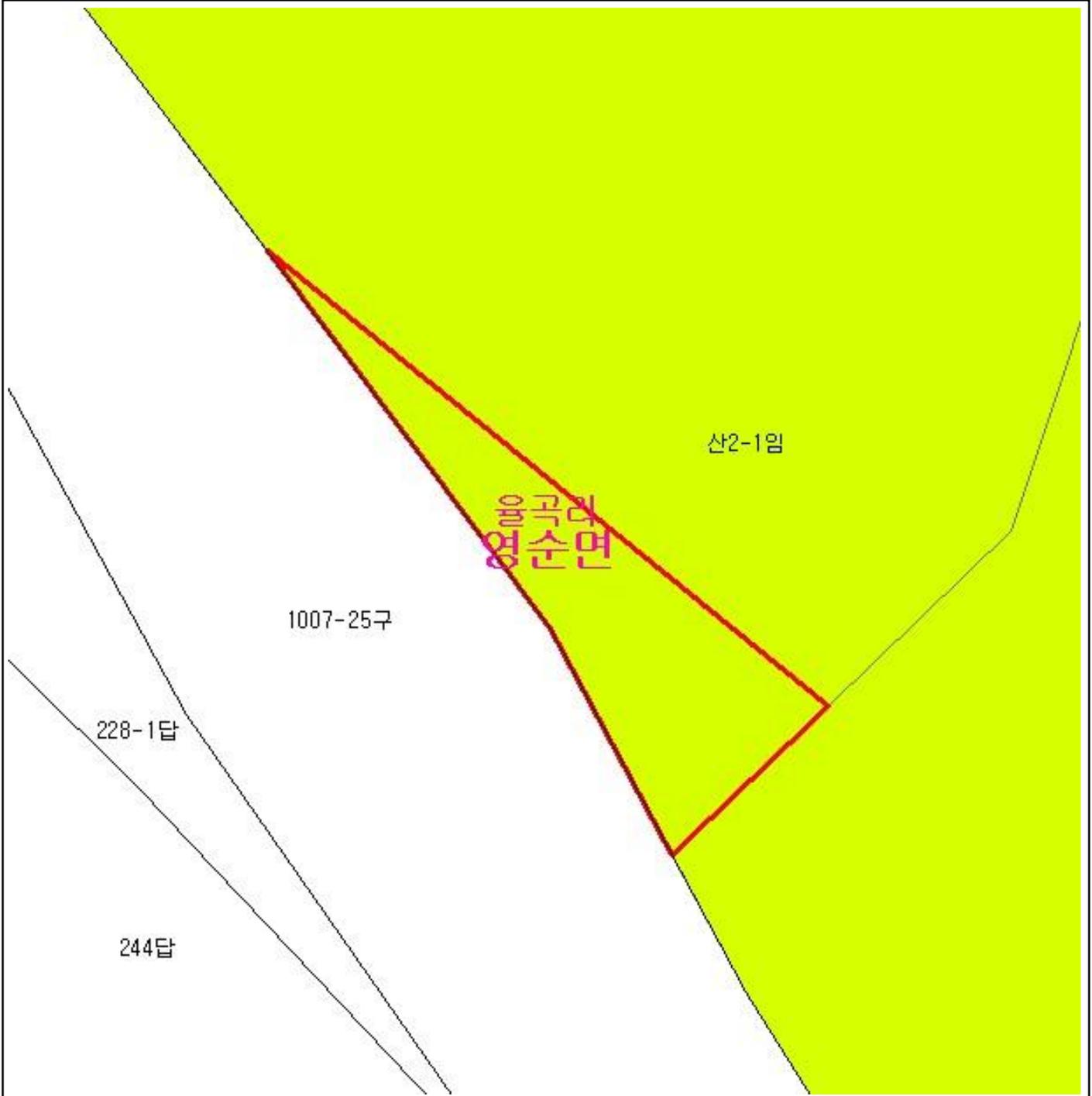


산지정보시스템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 
 산림청(<http://www.forest.go.kr>)

# 산 지구 분 도

( 보전산지 변경지정 [ 공익용 ▶ 임업용 ] )

NJ52-14-9-090



## 범 례

|   |       |   |      |
|---|-------|---|------|
|  | 공익용산지 |  | 지적선  |
|  | 임업용산지 |  | 행정경계 |
|  | 준보전산지 |  | 대상지역 |

지정권자 : 산림청장  
 고시일자 : 2013년 09월 16일  
 고시번호 : 산림청고시제2013-65호

- 비고 :
1. 측량의 기준 : 한국측지계
  2. 투영법 : 횡단 메르카토르도법(타원체는 베셀타원체)
  3. 높이의 기준 : 인천만의 평균해면
  4.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
  5.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, 국외반출, 임의개재, 편집을 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
  6.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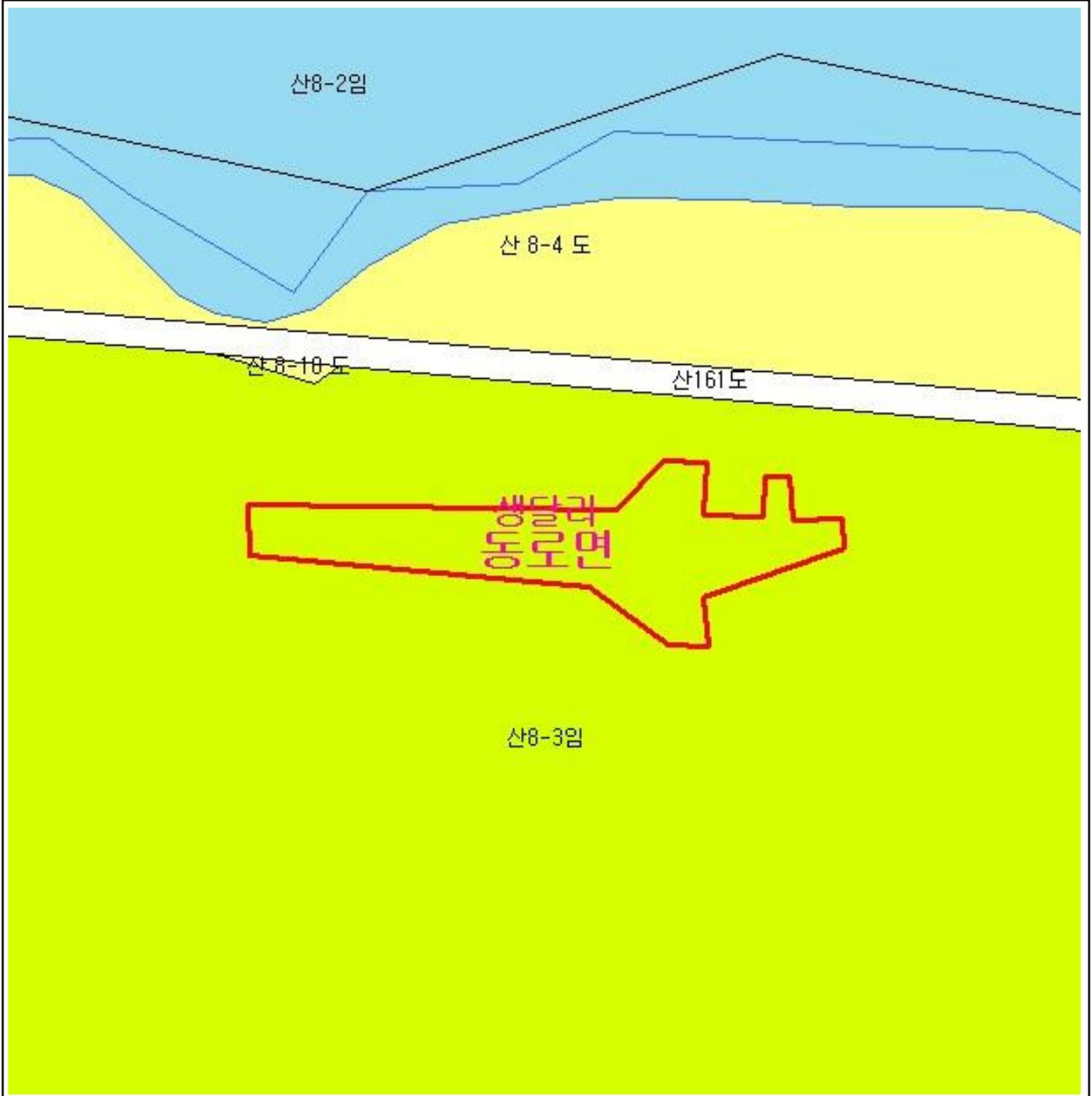


산지정보시스템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 
 산림청(<http://www.forest.go.kr>)

# 산 지구 분 도

( 보전산지 변경지정 [ 공익용 ▶ 임업용 ] )

NJ52-14-3-081



## 범 례

|   |       |   |      |
|---|-------|---|------|
|  | 공익용산지 |  | 지적선  |
|  | 임업용산지 |  | 행정경계 |
|  | 준보전산지 |  | 대상지역 |

지정권자 : 산림청장  
 고시일자 : 2013년 09월 16일  
 고시번호 : 산림청고시제2013-65호

- 비고 :
1. 측량의 기준 : 한국측지계
  2. 투영법 : 횡단 메르카토르도법(타원체는 베셀타원체)
  3. 높이의 기준 : 인천만의 평균해면
  4.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
  5.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, 국외반출, 임의개재, 편집을 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
  6.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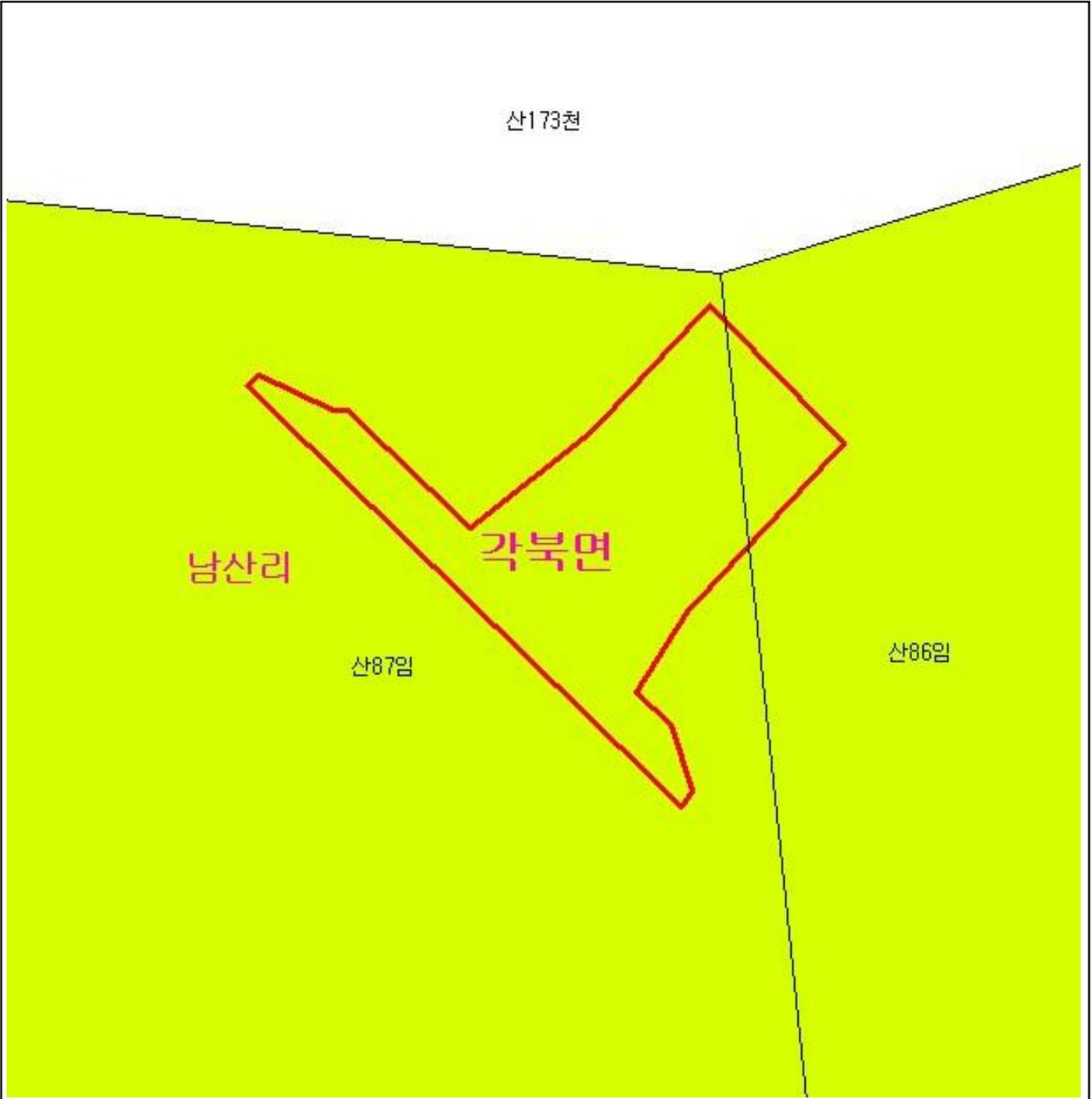


산지정보시스템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 
 산림청(<http://www.forest.go.kr>)

# 산 지구 분 도

( 보전산지 변경지정 [ 공익용 ▶ 임업용 ] )

NI52-2-11-023



## 범 례

|   |       |   |      |
|---|-------|---|------|
|  | 공익용산지 |  | 지적선  |
|  | 임업용산지 |  | 행정경계 |
|  | 준보전산지 |  | 대상지역 |

지정권자 : 산림청장  
 고시일자 : 2013년 09월 16일  
 고시번호 : 산림청고시제2013-65호

- 비고 :
1. 측량의 기준 : 한국측지계
  2. 투영법 : 횡단 메르카토르도법(타원체는 베셀타원체)
  3. 높이의 기준 : 인천만의 평균해면
  4.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
  5.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, 국외반출, 임의개재, 편집을 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
  6.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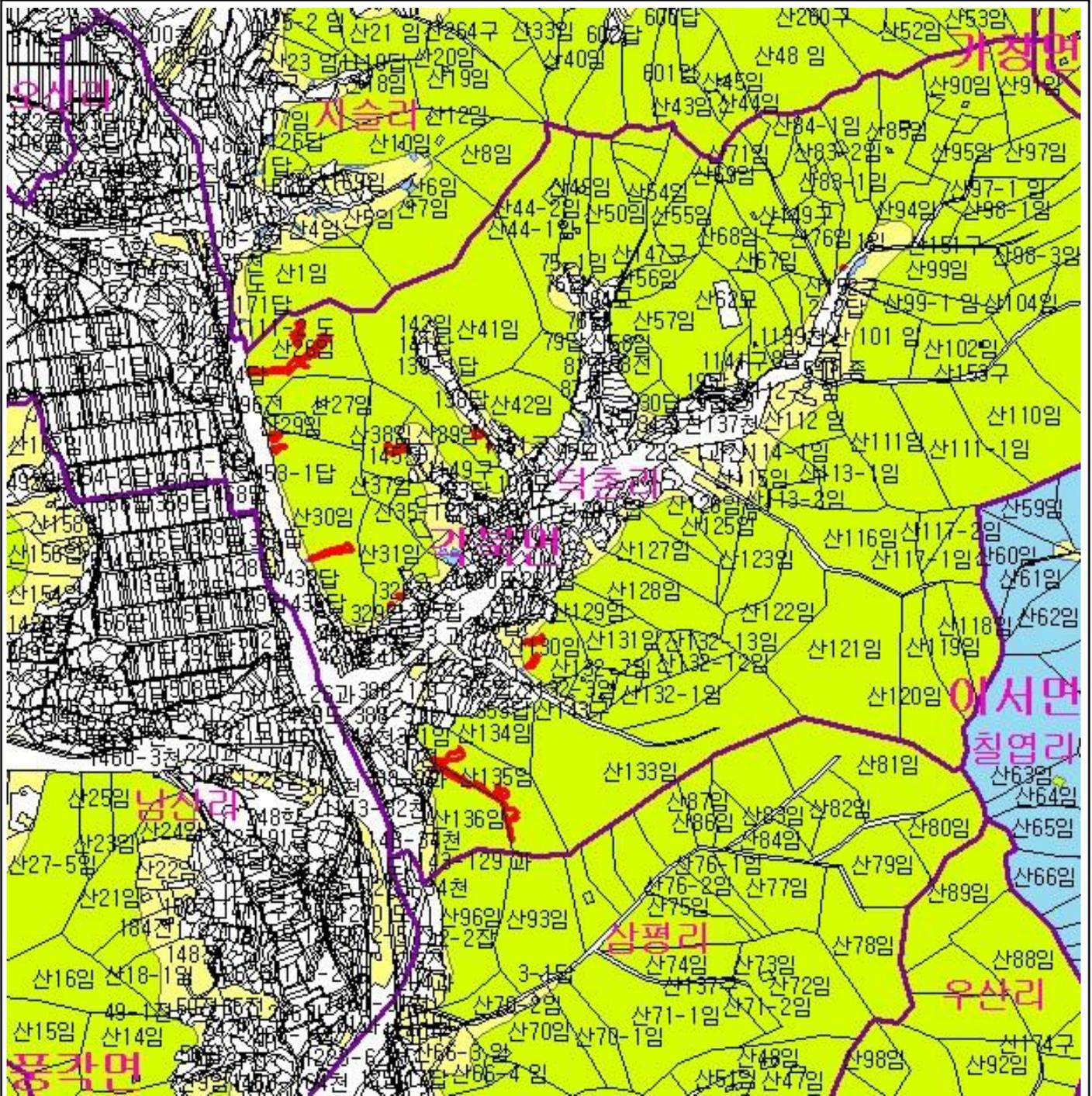


산지정보시스템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 
 산림청(<http://www.forest.go.kr>)

# 산 지구 구분도

( 보전산지 변경지정 [ 공익용 ▶ 임업용 ] )

NI52-2-11-024



| 범 례   |       |
|---|-------|
|  | 공익용산지 |
|  | 임업용산지 |
|  | 준보전산지 |
|  | 지적선   |
|  | 행정경계  |
|  | 대상지역  |

지정권자 : 산림청장  
 고시일자 : 2013년 09월 16일  
 고시번호 : 산림청고시제2013-65호

- 비고 :
1. 측량의 기준 : 한국측지계
  2. 투영법 : 횡단 메르카토르도법(타원체는 베셀타원체)
  3. 높이의 기준 : 인천만의 평균해면
  4.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
  5.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, 국외반출, 임의개재, 편집을 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
  6.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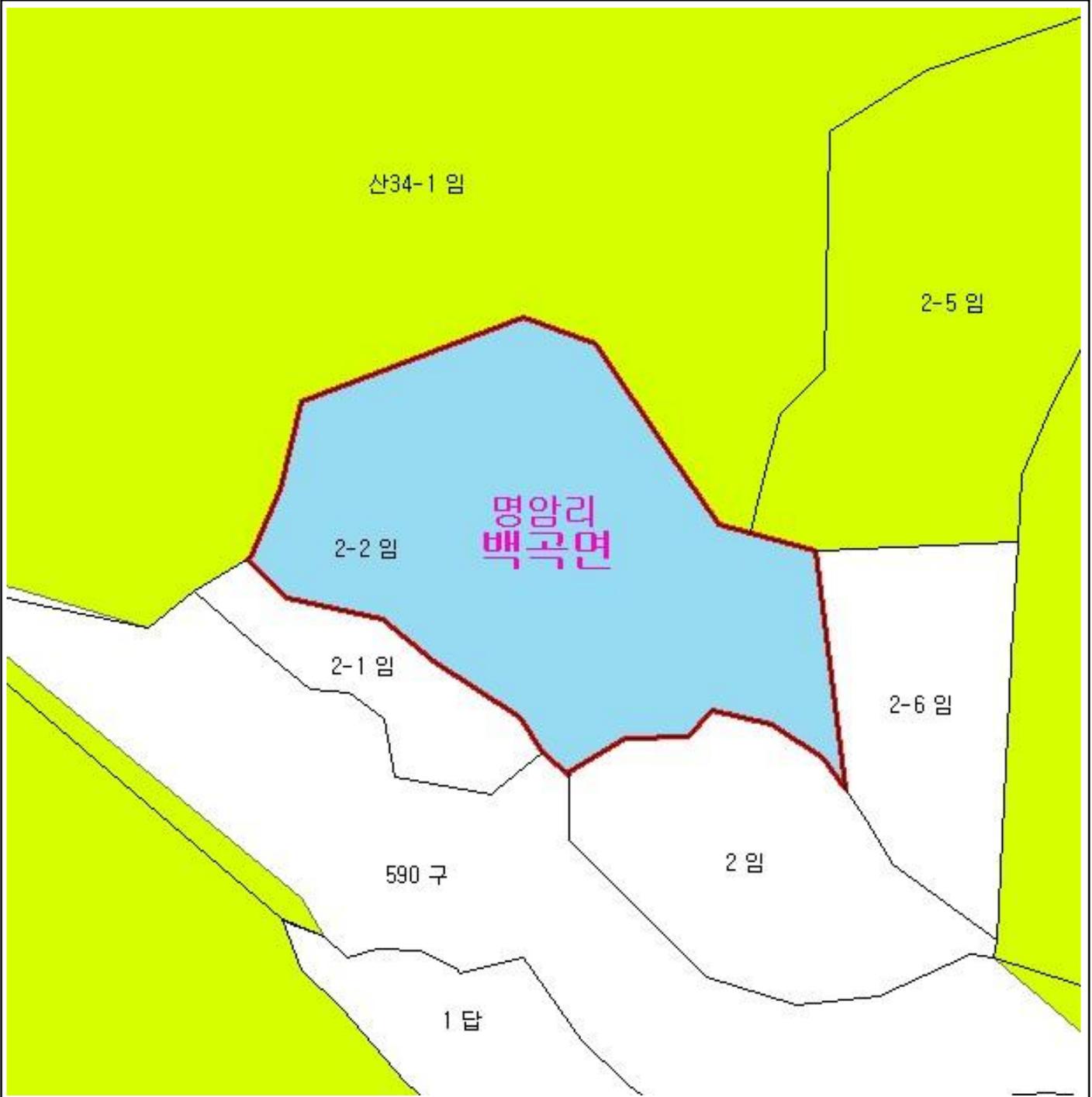


산지정보시스템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 
 산림청(<http://www.forest.go.kr>)

# 산 지구 구분도

( 보전산지 변경지정 [ 임업용 ▶ 공익용 ] )

NJ52-13-6-036



## 범례

|   |       |   |      |
|---|-------|---|------|
|  | 공익용산지 |  | 지적선  |
|  | 임업용산지 |  | 행정경계 |
|  | 준보전산지 |  | 대상지역 |

지정권자 : 산림청장  
 고시일자 : 2013년 09월 16일  
 고시번호 : 산림청고시제2013-65호

- 비고 :
1. 측량의 기준 : 한국측지계
  2. 투영법 : 횡단 메르카토르도법(타원체는 베셀타원체)
  3. 높이의 기준 : 인천만의 평균해면
  4.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
  5.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, 국외반출, 임의개재, 편집을 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
  6.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



산지정보시스템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 
 산림청(<http://www.forest.go.kr>)